의안번호	2216564
의 뢰 인	김민전의원
회 답 일	2026.5.29.
추계번호	26D0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9,100만원, 2030년 38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1억 4,000만원(연평균 12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 계	연평균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안 제15조)	191	-	954	1,191	3,804	6,140	1,228

주: 1.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안 제15조)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선거권)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5조 (선거권)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선거권자 수가 늘어나 선거관리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하게 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인쇄비가 선거권자 수에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비목에 해당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선거권자 수 증가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비 증가액[1]을 추계함

○ 또한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선거권자 수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증가액을 추계함

❑ 소비자물가상승률[2]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투표용지 인쇄비 외에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의 인쇄 및 발송비용,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으나 향후 세대수의 변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본 비용추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2.1%	2.3%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권자의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비용(투표용지 인쇄비 증가액)과 보조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증가액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선거권자(16세, 17세인 자) 수를 추정한 후, 투표용지 인쇄단가, 투표용지 수, 예상 투표율을 곱하여 투표용지 인쇄비 증가액, 보조금별 단가와 지급비율, 지급횟수를 곱하여 보조금 증가액을 산출

○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결과에서 연도별 16세, 17세 인구를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로 가정

[표 2] 연도별 16세 및 17세 인구추계결과: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16세 및 17세	886,643	915,481	942,569	925,056	888,423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투표용지 인쇄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예산안 기준 투표용지 인쇄단가는 42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

[표 3]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투표용지 인쇄단가	44	45	46	47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투표용지 수와 예상 투표율)**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7장, 2028년 국회의원선거 2장, 2030년 대통령선거(1장)와 전국동시지방선거(7장)를 합하여 총 8장이고 예상 투표율은 70%로 동일하게 적용

○ **(보조금 단가)** 경상 및 선거보조금의 계상단가는 2026년 기준 1,211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며, 여성 및 청년추천보조금 단가는 100원, 장애인추천보조금은 2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경상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상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	1,211	1,239	1,263	1,288	1,3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비율)**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당의 각 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본 추계에서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각 보조금별 지급비율(여성 50%, 장애인 65%, 청년 15%)를 적용

- 경상 및 선거보조금은 별도의 충족요건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은 매년,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각 선거별로 지급

○ **(지급횟수)** 선거보조금의 지급횟수는 2회,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은 1회 적용

-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횟수별로 지급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 2026년과 2028년에도 공직선거가 있으나, 해당 선거에 적용하는 선거권자 수는 2024년 총선의 선거권자 수로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를 반영할 수 없음
- 따라서 2028년 총선 이전에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보조금,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에 적용하는 선거권자 총수는 2024년 총선의 선거권자 수로 현행과 동일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2030년의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9,100만원, 2030년 38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합계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a, 명)		886,643	915,481	942,569	925,056	888,423	–
투표용지	인쇄단가(b, 원)	44	45	46	47	47	–
	투표용지 수(c, 장)	7	–	2	–	8	–
	예상 투표율(d)	70%	–	70%	–	70%	–
인쇄비 증가액(e=a×b×c×d, 백만원)		**191**	**–**	**61**	**–**	**234**	**486**
보조금 증가액	계상단가(f,원)	1,211	1,239	1,263	1,288	1,314	–
	경상(=a×f, 백만원)	–	–	893	1,191	1,167	3,251
	선거(=a×f×2회, 백만원)	–	–	–	–	2,334	2,334
	여성(=a×100원×50%, 백만원)	–	–	–	–	44	44
	장애인(=a×20원×65% 백만원)	–	–	–	–	12	12
	청년(=a×100원×15%, 백만원)	–	–	–	–	13	13
	소계(g, 백만원)	**–**	**–**	**893**	**1,191**	**3,570**	**5,654**
추가재정소요(=e+g, 백만원)		**191**	**–**	**954**	**1,191**	**3,804**	**6,140**

주: 1. 투표용지 인쇄비 증가액은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6년, 2028년, 2030년에만 발생
2. 경상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가장 최근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의 선거권자 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총액을 산출하므로, 2028년 1분기까지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028년 4월 총선 이후 선거권자 수가 갱신되어 2분기부터 개정안에 따른 경상보조금 부문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경상보조금 산식에 따른 총액을 산출한 후 75%(3개 분기에 해당)를 적용
3. 2028년 총선 이전에 선거가 있는 해의 선거보조금,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에 적용하는 선거권자 총수는 2024년 총선의 선거권자 수로 현행과 동일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2030년의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4. 2030년의 경우 선거가 2회 실시되므로 선거보조금은 2회이나, 대통령선거에는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회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는 증가하는 선거권자 수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